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

제정	1999.11.26.	제25차 개정	2014. 2.13.
제1차 개정	2000. 2. 3.	제26차 개정	2015. 1.30.
제2차 개정	2000. 8.10	제27차 개정	2015. 7.15.
제3차 개정	2001.11. 6.	제28차 개정	2016. 3.30.
제4차 개정	2002.11.13.	제29차 개정	2017. 1. 4.
제5차 개정	2002.12.24.	제30차 개정	2017. 9.19.
제6차 개정	2003. 9.29.	제31차 개정	2017. 11.21.
제7차 개정	2004. 1.20	제32차 개정	2018. 2. 28.
제8차 개정	2004.12. 9.	제33차 개정	2018. 7. 25.
제9차 개정	2005. 2. 2.	제34차 개정	2019. 3. 22.
제10차 개정	2006. 2. 7.	제35차 개정	2019. 11.22.
제11차 개정	2006. 8. 9.	제36차 개정	2019. 12.24.
제12차 개정	2006.10. 2.	제37차 개정	2020. 7. 6.
제13차 개정	2006.12.29	제38차 개정	2021. 2. 26.
제14차 개정	2007. 1.10.	제39차 개정	2021. 8. 9.
제15차 개정	2008. 1. 3.	제40차 개정	2022. 2. 15.
제16차 개정	2009. 2.27.	제41차 개정	2022. 4. 15.
제17차 개정	2010. 3. 1.	제42차 개정	2022. 8. 11.
제18차 개정	2010.12.16.	제43차 개정	2023. 9. 1.
제19차 개정	2011. 3. 1.	제44차 개정	2024. 4. 23.
제20차 개정	2011.12.14.	제45차 개정	2025. 3. 21.
제21차 개정	2012. 1. 6.	제46차 개정	2025. 7. 11.
제22차 개정	2013. 4. 1.	제47차 개정	2025. 9. 19.
제23차 개정	2013. 5.30.	제48차 개정	2026. 6. 26.
제24차 개정	2013. 8.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충북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일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사운영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부)별 전공) 본 대학원 각 학과(부)에 설치하는 전공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 2 장 입학 및 수업 연한 <개정 2017.9.19.>

제3조(선발방법) ① 학생 선발은 하위과정의 성적, 필답고사 성적, 면접구술고사의 성적 및 신체검사 결과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학생과 재외국민은 서류전형으로만 선발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 미술학과, 디자인학과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1항 이외에 실기평

가 성적을 추가하여 전형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③ 학생선발을 위한 전형일정, 필답고사 과목, 시행학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제4조(삭제)

제4조의2(수업 연한 단축 신청) ① 학칙 제32조제6항제1호에 따라 수업 연한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 연한 단축 신청원 및 지도교수 의견서를 3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② 학칙 제32조제6항제2호에 따라 수업 연한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7학기까지 전 과정을 이수하고, 국제학술지에 이 대학교 소속으로 논문(인문사회·예체능계열은 SSCI·AHCI급(공동저자 포함) 1편, 자연·공학·의학계열은 제1저자 또는 주저자로 SCI(E)급 1편)을 등재한 실적이 있는 증빙서류를 7학기 성적처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본조신설 2017.9.19.]

제 3 장 교육과정 및 교과목 등록

제 1 절 교 육 과 정

제5조(교육과정 편성원칙) ① 교육과정은 기초공통과목, 전공공통과목, 전공심화과목 및 연구과제로 구분한다. <개정 2017.9.19., 2019.11.22.>

② 기초공통과목은 교과를 이수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5과목 이내로, 전공공통과목은 각 학과(부)의 교과목 중 공통된 교과목으로 학과(부)별로 8과목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학과 특성상 초과 편성이 필요한 경우와 학과간 협동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19.11.22.>

③ 전공심화과목은 전공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으로 전공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9.11.22.>

④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는 학위청구논문작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도하고, 연구윤리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으로서 각 과정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목명과 논문지도교수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8.2.28. 2022.8.11.>

⑤ 교과목 학점단위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삭제) <개정 2017.9.19.>

제6조(교육과정 편성)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원 학과(부)주임교수는 제5조의 편성원칙에 따라 단과대학별, 계열, 학과(부) 전공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2.13., 2019.11.22.>

제7조(교육과정 변경) 편성된 교육과정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학과(부)주임교수는 교육과정변경원을 연구·대학원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2.26., 2025.3.21.>

제8조(강의) 강의는 석·박사 과정, 학년의 구분 없이 합동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의 2(협동(연계)과정 강의 운영) 학·연 협동(연계)과정의 강의 운영은 관련 협약서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제 2 절 교과목 개설 및 수강

제9조(교과목개설) ① 학과(부)주임교수는 매 학기 개강일 40일전까지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수업시간표를 편성하여 개강일 30일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교과목이수 및 학점) 각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19., 2019.11.22., 2022.4.15. 2022.8.11.>

1.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기초·전공공통과목(6학점 이상)

- 기초공통과목(3학점 이내)
- 전공공통과목(3학점 이상)

전공심화과목(9학점 이상)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연구과제(3학점)

2.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기초·전공공통과목(6학점 이상)

- 기초공통과목(3학점 이내)
- 전공공통과목(3학점 이상)

전공심화과목(18학점 이상)

부전공과목(6학점 이내)

연구과제(3학점)

3. 통합과정: 57학점 이상

기초·전공공통과목(9학점 이상)

- 기초공통과목(3학점 이내)
- 전공공통과목(6학점 이상)

전공심화과목(30학점 이상)

부전공과목(12학점 이내)

연구과제(3학점)

제11조(전공공통과목 및 부전공과목) ① 학과(부)의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전공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부)의 전공심화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19.11.22. 2022.8.11.>

② 각 과정의 부전공과목은 유사전공 또는 타 학과(부)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택하되, 전공과의 학문적 연계성을 해당 학과(부)주임교수가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2.13., 2017.11.21. >

제11조의2(다른 학과,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인정) ① 학칙 제63조의 다른 학과,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인정은 국·내외 다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취득한 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과간 협동과정의 이수를 위한 취득학점 중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12학점 이상을 해당 협동과정 참여학과(부)의 대학원 전공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과간 협동과정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제12조(선수과목 및 이수학점의 지정) ① 학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과목 이수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공 관련학과(부)에서 정한다. 다만, 선수과목 이수를 지정받은 자는 매 학기 초에 소속 학과(부)주임교수로부터 이수하여야 할 전공분야와 최소이수학점을 지정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선수과목을 지정받은 자는 하위학위과정의 교육과정 내에서 학과(부)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최소 6학점 이상 최고 24학점 이내에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30.>

제13조(선수과목 이수 및 수강학점) ① 제12조 규정에 의한 선수과목의 이수는 지정된 전공분야 내에서 최소이수학점이상 수강과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의 수강학점은 학칙 제60조 제4항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 이외로 하고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15.>

제1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전산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번호 또는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중복이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수강신청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1.2.26.>

제15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지도교수와 학과(부)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전산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전과 및 전공변경) 학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전과 및 전공변경은 1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전과 및 전공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해당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과(전공)변경원
2. 신.구 지도교수 동의서
단, 지도교수가 미정인 경우 신.구 주임교수 동의서
3. 성적증명서

제 3 절 학사과정 학생의 수강

제16조(수강자격) 학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직전 2개 학기 평균성적이 3.2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3.30., 2017.9.19.>

제17조(수강학점) 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학점은 1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계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25.3.21.>

제18조(수강신청) 학사과정학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대학원교과목수강신청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산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성적의 보관) 학사과정 학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한 때에는 해당 학생의 성적을 처리하여 학적부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절 교과목 담당교수

제20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1.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개정 2014.2.13.>
2. 각종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담당교수)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는 논문지도교수가 담당한다.<개정 2018.2.28.>

제22조(담당교과목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1과목을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연구과제, 공통과목 제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1.>

제23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10일전까지 전산온라인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강사제청) 강사를 필요로 하는 학과(부)주임교수는 개강 30일전까지 강사위촉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25조(교과목 담당교수 변경) 교과목 담당교수가 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강의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학과(부)주임교수는 교과목 담당교수 변경원을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위원회

제26조(지도교수) 각 과정에 학생 개인별로 지도교수를 두며, 학위청구논문 지도와 학사 지도를 담당하며,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을 지도할 때 연구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의 자격과 역할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지도교수 위촉) 지도교수 및 공동지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2개월 이내 또는 두 번째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학과(부) 주임교수가 위촉한다.<개정 2021.2.26., 2025.7.11.>

제28조(지도교수의 자격)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2.13.>

1. 석사과정은 해당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로 하며, 박사과정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 전임교원으로 한다.
<개정 2015.1.30.>

2. 기타 총장이 인정한 자

제29조(논문지도 학생수) 논문지도교수의 담당 학생수는 학과(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학과(부)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논문지도위원회) (삭제)

제31조(지도위원회 구성)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제32조(위원자격) (삭제)

제33조(지도위원회 기능) (삭제)

제34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지도교수가 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때는 지도교수 또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학과(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 2025.7.11.>

- ② 학생이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할 때는 지도교수와 협의 후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학과(부)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학과(부)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소속 단과대학장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2023.9.1., 2025.7.11.>

제 5 장 논문지도 및 논문작성

제35조(논문작성 계획발표) ①(삭 제)

②(삭 제)

제36조(연구과제 실적보고) ①(삭 제)

②(삭 제)

제37조(논문공개발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제출 이전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논문공개발표는 각 학위과정에서 총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학과(부)별로 개최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공개발표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각 학과(부)주임교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6.>

제38조(논문지도 결과보고) (삭 제)

제39조(논문작성 요령) 논문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요령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40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과목) ① 외국어시험은 석사과정에서는 영어,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에서는 영어 이외에 학과(부)의 신청을 받아 독어, 불어, 중어, 한문, 노어, 일어 중 택일한 제2외국어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학과(부)에서 제2외국어시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과정별, 계열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외국어시험은 총장이 인정하는 외국어평가기관의 일정 점수 취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합격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외국어시험은 본교 국제교류본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어 관련 강좌 48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8. 7. 25.>

⑤ 종합시험은 과정별, 전공별로 해당 전공에서 필요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과목마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과목 에 대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1조(응시자격) ① 외국어시험은 입학한 후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에서는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27학점 이상, 통합과정에서는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평균 B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합과정의 중도포기자는 석사과정을 준용한다.

제42조(시험시기 및 응시절차) 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연 2회 실시하되 외국어시험은 2월과 8월중으로 하고 종합시험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응시는 소정의 서식에 따라 교내 홈페이지에서 웹(web)으로 신청한다.

제 7 장 논문심사

제42조의2(논문제출자격) ①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 중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18.2.28.>

③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300%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과(부)나 전공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실적 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5.1.30., 2017.9.19. 2022.4.15., 2025.3.21.>

④ 삭제

⑤ 삭제

구 분	주저자		공동저자		비 고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자연·공학· 의학계열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자연·공학· 의학계열	
SSCI, AHCI, SCI(E)	300%	300%	200%	200%	※ JCR 분야별 IF 10% 이내 공동저자 300% 적용
Scopus	200%	200%	150%	150%	
한국연구재단등재지	150%	150%	100%	100%	
개인전시회 (평면1000호이상) (입체10점이상)	150%				미술·디자인학과

※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개정 2026.6.26.>

제43조(박사학위 신청자격 심사) (삭제)

제44조(논문심사신청)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원
2. <삭 제> <개정 2021.2.26.>
3. 논문 4부
4. 연구윤리 서약서(별표2)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원
2. <삭 제> <개정 2021.2.26.>
3. 논문 6부
4. 논문발표실적물
5. 연구윤리 서약서(별표2)

③ 해당 학과(부)주임교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논문심사신청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2.26.>

제44조의2(논문심사방법) 학위논문 심사는 심사자가 대면, 비대면(이메일 등)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대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학위논문공개) ①학위 논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7.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위 취득예정자가 학술지 게재, 국가 안보, 특허 등록 등의 사유로 학위 논문 공개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2년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7.6.>

③ 제2항의 학위 취득예정자가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6.>

④ 학위 취득예정자가 제1항의 학위 논문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위 논문심사위원회의 승인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025.3.21.>

제45조(심사위원자격) ①(삭제)

②(삭제)

제46조(심사횟수) 석사학위논문은 2회 이상 심사하며 박사학위논문은 3회 이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논문대체 프로젝트 학위 신청 등

제47조(프로젝트 학위 정의) ① 충북대학교 학칙 제84조 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학위’는

정부의 연구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위 논문 제출 없이 프로젝트 결과물을 심사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의 정부 연구인력양성사업은 프로젝트 학위제 적용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21.2.26.>

③ 제1항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산업체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온 결과물 또는 프로젝트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과에서 제시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온 결과물을 말한다. <개정 2021.2.26.>

제48조(프로젝트 학위 운영 학과) 프로젝트 학위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부)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2.26.>

제49조(프로젝트 학위 신청 등) ① 프로젝트 수행으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1개 학기 이수 후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해당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제1항에 의거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2개 학기 이상 해당 학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또는 2개 학기 이상 해당 학과의 프로젝트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③ 프로젝트 학위 과정의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21.2.26.>

제50조(프로젝트 학위 심사 등) 프로젝트 수행으로 석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심사료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1. 프로젝트 요약 보고서
2. 프로젝트 심사원
3.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4부
4. 연구윤리 서약서

제51조(프로젝트 결과물 심사) 그 밖의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는 프로젝트 석사 학위 수여 심사의 자격, 절차 및 합격에 관한 사항을 일반 석사학위 수여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1.2.26.>

제52조(정원의 외국인특별전형학과의 논문작성 외 학위수여 요건) 정원의 외국인특별전형학과 석사 과정의 경우 논문제출자격(단,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이수 제외)을 득하고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게도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제 9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53조(연구과정 입학자격)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 2.13.>

1. 4년제 대학졸업자

2. 위 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개정 2014.2.13.>

제54조(선발절차 및 모집인원) 연구생의 선발절차는 석사과정에 준하고 석사학위 과정 정원의 10% 이내의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의2(학점인정) ① 학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9학점 범위 내에서 석사과정의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과정 입학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21.>

1. 학점인정원

2. 해당 연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동의서 <개정 2017.11.21.>

3. 성적증명서

제55조(수업 연한) 연구과정생의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하되 재학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교육과정) 연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57조(수강과목) 매학기 학위과정에 설강된 과목 중에서 3과목 이내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공개강좌 운영) 본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강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공개강좌 기간은 1회 강좌마다 6개월 이내에 한다.

2. 공개강좌 개설 시 강사료,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9조(운용)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석사과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1999. 11. 26)

① 이 세칙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세칙 시행이전의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 화학공학과 공업화학전공 및 기계공학과 정밀기계전공은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학적변동 없이 수료하는 연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으로 2000학년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 해당 전공이 없을 때에는 2000학년도 이후에 신설된 관련 전공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0. 2. 3)

이 개정세칙은 200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8. 10)

제1조 이 개정세칙은 2001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개정세칙 이전에 미생물학전공, 생화학전공, 천문학전공, 농학전공, 주거학전공, 가정경영전공, 생체시스템공학전공 및 의용전자공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세칙에 의하여 변경된 전공에 재적중인 자로 본다.

② 이 개정세칙 이전에 정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축산학전공, 임학전공, 우주과학전공에 재적중인 자는 이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은 석사과정에 한한다.

부 칙 (개정 2001. 11. 6)

이 세칙은 2001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13)

이 세칙은 200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2. 2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또는 전공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이전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삭제된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 또는 이수중인 자는 이 개정 세칙에 의거 변경된 관련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 또는 이수중인 자로 본다.

부 칙 (개정 2003. 9. 29)

이 세칙은 2003. 9. 29일부터 시행하되,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4. 1. 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 3.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개정사항(석사과정 지역개발공학전공, 석.박사과정 방사선종양학전공 제외)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세칙 이전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삭제된 학과 또는 전공(석사과정 농지공학전공, 농촌환경시설공학전공, 석.박사과정 치료방사선과학전공은 제외)은 재적생이 해당 학위를 받는 학년도까지 존속하며, 소속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관련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21 .>

② 이 개정 세칙 이전의 석사과정 농지공학전공, 농촌환경시설공학전공, 석.박사과정 치료방사선과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변경된 관련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4. 12. 9)

이 세칙은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 2. 2)

이 세칙은 200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6. 2. 7)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06. 8. 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06. 10. 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06. 12. 2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세칙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07. 1. 1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1. 3. 규칙 제802호)

이 세칙은 2008. 3.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개정사항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 2.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세칙 이전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삭제된 학과 또는 전공

(석·박사과정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전공 제외)은 재적생이 해당 학위를 받는 학년도까지 존속하며, 소속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관련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세칙 이전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전공 재적생은 변경된 관련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3.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세칙 이전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삭제된 학과 또는 전공(석·박사과정 토질공학 전공, GIS 전공은 제외)은 재적생이 해당 학위를 받는 학년도까지 존속하며, 소속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할 경우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관련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세칙 이전의 토질공학 전공, GIS 전공 재적생은 각각 변경된 관련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12. 1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모집단위 및 학과(부)가 변경된 경우 변경 이전의 모집단위 및 학과(부)는 해당 입학년도 입학생이 학적 변동 없이 졸업하는 학년도까지 존속한다.

② 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되었다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 모집단위 및 학과(부) 명칭 변경으로 해당 모집단위 및 학과(부)가 없을 때에는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단위 및 학과(부) 존속 기한 만료 시 해당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2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모집단위 및 학과(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 3. 1.)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제4항의 종합시험 과목별 합격제도는 2011학년도 제2학기 실시되는 종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1. 12. 1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사항은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2. 1. 6.)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4. 1.)

제1조 이 개정세칙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세칙 이전의 정보통신공학과 통신회로및시스템공학전공은 정보통신공학전공에 재적 또는 이수중인 자로 본다.

② 이 개정세칙 이전에 편성된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은 개정된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이 개정세칙에 따른 학부는 학부 소속 전공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학부 주임교수의 업무를 전공 주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3. 5. 30.)

제1조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세칙 이전의 환경·도시공학과 수질오염관리전공, 대기오염제어 및 폐기물처리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환경·도시·화학공학부 환경공학전공에, 환경·도시공학과 도시계획 및 설계학 전공, 도시시스템 및 교통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환경·도시·화학공학부 도시공학전공에,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환경·도시·화학공학부 화학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세칙 이전에 편성된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은 개정된 모집단위의 교육과정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개정 2013. 8.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세칙 이전의 측량공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세칙 이전에 편성된 측량공학전공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전공의 교육과정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개정 2014. 2. 13.)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중 약물소재전공, 약물기능전공, 제제임상전공의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은 신약개발전공의 교육과정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개정 2015. 1. 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세칙 제28조 및 제42조의2항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5. 7. 15.)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3. 30.)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7. 1. 4.)

이 개정세칙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9. 19.)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42조의2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학과간 협동과정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7. 11.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이전의 토목공학과 토질공학 및 건설관리 전공은 재적생이 해당 학위를 받는 학년도까지 존속하며, 소속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할 경우 해당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관련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8. 2.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8. 7. 25.)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3. 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9. 11. 2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학과 및 전공 신설 및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 및 전공 신설과 개편에 따른 학생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45조의2의 개정사항 : 2020학년도 입학생
2. [별표 1]의 연구장비개발학 협동과정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3. [별표 1]의 특용식물학과 연초학 폐지, 사회학과 박사과정, 바이오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 전공, 방재공학협동과정 재난관리, 융합보안협동과정 및 위기관리학협동과정 :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
4. [별표 1]의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협동과정 :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
5. [별표 1]의 연구장비개발학협동과정의 폐지, 교육학과의 IR 전공, 물리학과와 연구장비개발 전공, 의류학과의 의류학 전공 및 글로벌패션비즈니스 전공 : 2020년 1학기 신입생

제2조(학과 명칭 변경 및 학과 폐지 등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개정 세칙 이전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패션디자인전공은 재적생이 해당 학위를 받는 학년도까지 존속하며, 소속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할 경우 해당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관련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 개정 세칙 이전의 연구장비개발학협동과정생은 물리학과와 연구장비개발학 세부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9. 12. 24.)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0. 7. 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부) 설·폐에 따른 경과조치) ① 대학원 생물학과, 미생물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대학원 생명시스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대학원 환경·도시·화학공학부(환경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재료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대학원 도시·에너지·환경융합학부(환경공학전공, 도시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재료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학원 약학부(제약산업전공) 재적생은 응용약학과 제약산업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대학원 약학부(신약개발전공) 재적생은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대학원 약학과 신약개발소재전공 및 신약개발기능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대학원 임상약학과 재적생은 대학원 응용약학과 임상약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폐지된 학과(부)에서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각각 해당 신설된 학과(부)에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및 학과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대학원 토목공학과 토질공학전공과 건설관리및시스템전공은 기존 재적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치후 폐지한다.

② 대학원 의학과 세포생물학및유전학전공 재적생은 2021년 3월 1일부터 의학과 의과학융합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학원 미래사회융합 학과간협동과정은 기존 수료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치 후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세칙은 2021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2. 2. 15.)

제1조(시행일) 별표 1의 개정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 및 학과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세칙 이전에 생명시스템학과 동물과학및보전생물학전공, 식물과학및환경생물학전공, 미생물학및생명공학전공은 재적생이 해당 학위를 받는 학년도까지 존속하며, 소속 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여 해당 전공이 없을 때에는 변경된 관련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22. 8. 1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 개정세칙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 4. 2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제3항 하단의 표 개정사항은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부 칙(개정 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5. 9. 1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6. 6.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